

『2026년 경기도 주 4.5일제 시범사업』 참여 기업 모집 공고

경기도는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「2026년 경기도 주 4.5일제 시범사업」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2월 25일

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1 모집 개요

- 신청 기간: 2026. 2. 25.(수) 09:00 ~ 3. 27.(금) 18:00까지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(PC 및 모바일) ※ 방문 접수 및 우편·이메일 접수 불가
 - 신청 페이지: 잡아바 어플라이(<https://apply.jobaba.net>)
- 신청 자격: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(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)
- 사업내용 :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 사업 실시 및 효과성 분석
 - ▶ (노동시간 단축 실시) 3개 유형 중 노사 합의로 택일

구분	유형1	유형2	유형3
명칭	주 4.5일제	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	격주 4일제
설명	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되, 주1일(특정요일)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간 총 근로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임	주 5일 근무 형태를 유지하되, 자유롭게 특정요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임	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하여 격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하는 제도 (요일은 기업 자율선택)
1일 근로시간	1일 8시간 근무 x 4일 + 1일 3시간 또는 4시간 근무	5일 7시간 근무 또는 3일 8시간 + 2일 6시간 근무 등	1주차 주 5일(1일 8시간) 근무 2주차 주 4일(1일 8시간) 근무
단축시간	한 주당 4시간 또는 5시간	한 주당 4시간 또는 5시간	2주 8시간
주간 총 근로시간	35시간 또는 36시간	35시간 또는 36시간	2주 평균 36시간

- ▶ (효과성 분석) 참여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, 정책 성과 분석

○ 지원내용: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·신규채용 장려금, 컨설팅 등 지원

- ① 장려금 지급: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7만원 지원(5시간 단축 시,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)
- ② 신규 인력 채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신규 채용 장려금 월 80만원 지원
- ③ 컨설팅 및 근태관리 프로그램 지원: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, 공정개선 컨설팅, 근태관리 프로그램 지원(기업당 15백만 원 한도, 참여기업 수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)

2

신청 자격 (아래 ① ~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)

- ①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한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·중견기업¹⁾
 -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(본사, 지점, 제2공장 등 불문)
- ② 사업 도입을 통해 전 직원 대상 소정근로시간을 최종 주 35시간 또는 주 36시간 이하로 단축 예정인 기업(기 단축업체 참여 불가)
- ③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완료된 기업
 -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제출 필수
- ④ 지문인식, 휴대폰 앱 등 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기업
 -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기록을 등록해야 함

※ 최근 3개월의 전자적 방식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확약서 대체 제출

□ 지원 제외 사업주
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민원 야기, 임금체불, 환경오염,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도박,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
-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

□ 지원 제외 근로자
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
- 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
- 단시간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- 정부 지원 사업 중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근로자(고용노동부 워라밸장려금,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등)

□ 전직원 참여 원칙

- 수습직원, 시급제 근로자, 시용 근로자도 단축 근로 대상이며, 근태 확인이 어렵거나 단축 근로 적용이 어려운 재택 근무자, 파견 근로자, 실습생, 사회복무요원 등은 예외 대상임
- 예외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, 도급·용역계약서 등으로 단축 제외 사유 증빙 필수
- 예외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 시 사업 참여 불가

1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,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

3

신청 방법

- 신청 기간: 2026. 2. 25.(수) 09:00 ~ 3. 27.(금) 18:00 까지 ※ 24시간 신청 가능
- 신청페이지: 온라인 접수프로그램(방문 접수 및 우편·이메일 접수 불가)
 - 잡아바 어플라이(<https://apply.jobaba.net>) ※ PC/모바일 가능
- 신청절차:

- 회원가입 및 로그인 ▶ 지원사업 ▶ 「2026년 경기도 주 4.5일제」 ▶ ‘신청하기’

신청 자격
자가 진단

약관 동의
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)

신청 정보 입력
(필수 제출서류 첨부)

사업 신청 완료
(임시저장/최종 제출)

- 마이페이지 → 신청 현황에서 임시저장·최종 제출한 신청서 확인 가능

- PC 크롬(Chrome) 및 엣지(Edge)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
- ‘신청 정보 입력’ 단계에서 회원정보가 자동 입력되므로 신청서 작성 오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신청 전에 회원정보가 정확한지 확인
 - ※ 잡아바 어플라이 > 마이페이지 > ‘회원정보 수정하기’에서 수정 가능
 - ※ 회원정보 수정 내역은 이미 제출한 신청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
- 자동 입력이 안되는 경우 Ctrl+F5(윈도우) 또는 Command+R(MacOS)을 눌러 브라우저 캐시를 갱신(새로고침)
- 잡아바 어플라이 이용 문의 ☎031-270-9669

○ 유의사항

- 최종 제출 시 신청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, 제출 전 작성 내용과 첨부 서류를 반드시 확인(임시저장 기능 이용 권고)
- 접수 프로그램 상 3.27.(금) 18시까지 제출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인정
- 접수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프로그램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여유 있게 신청 권고

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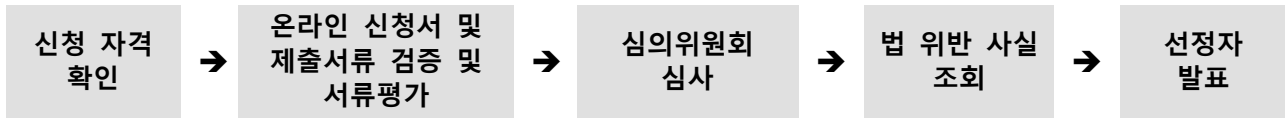
제출 서류

구분	용도	제출서류 목록
필수 제출	신청자격 확인	① 경기도 주 4.5일제 시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양식1) ② 사업자등록증 ③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(공고일 기준 중소벤처24, 정부24발급) ④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(양식2) ⑥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양식3) ⑦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※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처리 ⑧ 회사소개서(양식4)
	직원 명수 확인 및 임금삭감 여부 확인	⑨ 직전 3개월 출퇴근 관리 기록(지문인식 등 전자·기계적 방식) ※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 기록이 없는 경우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확약 서 대체 제출(양식7) ⑩ 직전 3개월 직원명부 및 급여대장 ⑪ '26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※ 공고일 기준,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(https://www.4insure.or.kr 발급) ⑫ 사업참여 제외대상 근로자 명단(양식8)
	법 위반 사실 확인	⑬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양식5) ⑭ 법 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(양식6)
	취업규칙	⑮ 주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
선택 제출	일부 사업장 적용 확인	⑯ 법인 등기부등본(해당 시에만 제출) ※ 전체 사업장 외 경기도 내 사업장 또는 지사만 신청할 경우
	가점 여부 판단	⑰ 각종 우수 및 강소기업 인증서(공고일 기준 3년 이내, 해당 시 제출) 경기도 도지사 표창,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,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,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,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, 청년 친화 강소기업, 글로벌 강소기업, 인재육성형 중소기업, 예비 유니콘 기업, 무역 수출의 탑 수상 기업, 기타 중앙부처 인증 또는 표창, 기타 경기도 인증 또는 표창
	근태관리 프로그램 신규도입 기업	⑱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 확약서(양식7)

※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, 4대 보험 완납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2026년 2월 이후 발급분 제출

5 심사 방법

○ 서류 검증 절차



○ 선정방법: 정량평가(서류심사) 및 정성평가(심의위원회 심의)

○ 심사 및 평가

- 심사방법: 서류심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
- 평가 및 배점: 총점 100점 (정량평가 20점, 정성평가 80점) ※총점60점미만은 선정제외

○ 선정 및 결과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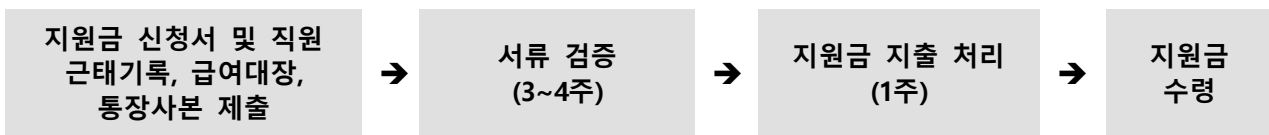
- 정량 · 정성평가 점수 합산 후 최고점 순으로 선정, 결과는 개별 통지
- 미선정된 기업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대조군 및 차년도 사업대상 후보로 별도 관리
- 선정 후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사업 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

6 장려금 지급

① 근로시간 단축장려금

- 지급 시기: 신청일 기준 40일 내외(2개월 단위로 지급)

※ '26년 5~6월 단축분 지원금은 '26년 7월 신청·8월 지급



- 지급 방법: 신청서 내 기입한 기업 계좌로 지급
- 지급 금액: 월 최대 27만원, 단축시간별 차등 지급('26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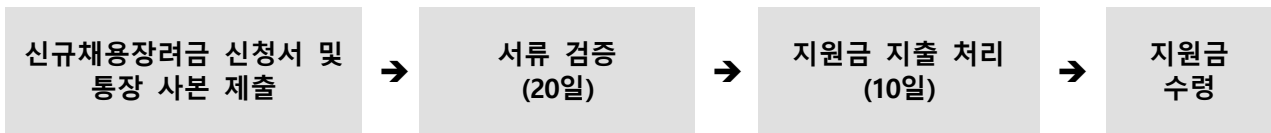
연번	구 분	금 액	비고
1	주당 소정근로시간 5시간 단축	인당 270,000원	
2	주당 소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	인당 220,000원	

② 신규채용 장려금(신규)

- 지급 대상 : '25년 및 '26년 경기도 4.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중, 신규채용 시점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한 기업

※ 신규채용 근로자 요건 : 고용보험 가입·주 30시간 이상 근무·6개월 이상 재직 시, 타 정부사업 인건비 중복 지원 불가

- 지급 시기 : 신규 직원 입사 후 3개월 이후 1차 지급, 6개월 이후 2차 지급
- 신청 방법



- 지급 방법 : 신청서 내 기입한 기업 계좌로 지급
- 지급 금액 : 근로자 1인당 80만원(최대 6개월)

7 | 지원금 환수 및 지급 제한

- 참여기업이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거나,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, 또는 근태자료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「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금 지급 중단 및 기지급액 환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.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(근거법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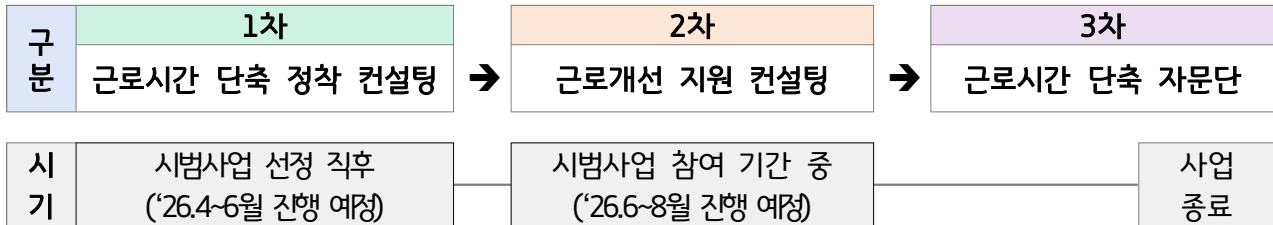
제34조(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 2.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3.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
-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.

8 컨설팅 및 효과성 분석

○ 컨설팅 기간: 2026년 4월 ~ 2026년 12월

○ 개 요 (※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)



○ 근로시간 단축 정착 컨설팅

- 대상: ‘26년 신규 참여기업
- 내용: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법·제도 등 근로 조건 전반의 필수 조정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진행

○ 근로개선 지원 컨설팅

- 대상: ‘25년 참여 기업 중 희망 기업 및 ‘26년 신규 참여기업
- 내용: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효과적인 생산활동 및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팅 진행

○ 근로시간 단축 자문단

- 대상: ‘26년 신규 참여기업
- 내용: 경기도 주 4.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, 의견 수렴 및 제도가 기업에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문

○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

- 목적: 경기도 주 4.5일제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생산성, 근로자 만족도, 근무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, 향후 사업 개선 및 확대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
- 조사 방식: 전 직원 설문조사(온라인) 및 심층 면접조사(방문조사)
- 선정기업은 기업 컨설팅, 대표 및 노동자 심층 인터뷰(2회)에 필수 참여해야 함.

※ 컨설팅 수행을 위해 선정기업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, 업무분장표, 출퇴근 현황 자료 등 인사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제출하고, 추가 자료 요청에도 협조하여야 함.

※ 효과성 분석을 위해 선정기업은 임금대장, 재무제표, 손익계산서 등 임금·경영 현황 등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제출하고, 추가 자료 요청에도 협조하여야 함.

9

근태관리 지원

○ 근태관리 프로그램 지원

- ①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출퇴근 시간 기록, 연차 사용 및 휴게 시간, 출장, 휴가, 초과근무 시간, 주 단위 근로시간 등을 관리
 - ※ 근태 관리는 지원금 지급의 핵심 기준이며, 출퇴근 기록 등 근로시간 단축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함
- ② 기존 근태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기업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근로시간 단축 실적 확인을 위해 전자적 방식의 **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 필수**

○ 근태관리 프로그램 지원 방식

- ① 신규 프로그램 도입 시(사용료 실비 지원, 인당 4,000원 이내)
 - 모바일 GPS 기반 등을 포함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휴가, 출장, 초과근무 등 근태 기록 관리가 가능한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 후 근태 기록 제출 필수
- ② 기존 프로그램 계속 이용 시(사용료 실비 지원, 인당 4,000원 이내)
 - 전자적 방식으로 휴가, 출장, 초과근무 등 근태 기록 관리가 가능한 기존 근태관리 프로그램 사용 가능
 - ※ 현재 사용 중인 근태관리 프로그램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 참여 가능

10

기타 문의

- 신청 전 모집 공고문 및 FAQ를 반드시 확인
- 추가 문의사항은 **북부광역사업팀(☎031-270-9839)**으로 연락
 - 운영시간: 평일(주말 및 공휴일 제외), 09~18시(점심시간 11:30~12:30분)
- 접수기간 중 문의량 증가로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잡아바 어플라이
→ 경기도 주 4.5일제 → Q&A 탭(1:1문의)에 문의